

제 610 호
1977. 6. 13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집 : 문화공보관 조 용 하
전화 75-73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5444

시 보

차 례

◎ 고 시

제 164 호	도시계획시설 (지하도)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3
제 17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4
제 173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적승인.....	4
제 174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5
제 175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9
제 176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일부변경.....	11
제 177 호	도시계획용도 지역변경 지적승인.....	12
제 179 호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창사) 결정 및 지적승인...	12
제 180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13
제 181 호	도시계획시설 (광장)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14
제 182 호	동청사위차 변경고시.....	14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83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5
제	184	호	도시계획사업 (공용의청사) 시행허가.....	15
제	185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	17
제	186	호	사회단체등록취소고시.....	19
제	187	호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결정및지적승인.....	19
◎	공	고		
제	117	호	전기용품 재조업 허가취소.....	20
제	119	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관리처분 계획공람공고.....	21
제	120	호	R S 표시정지처분공고.....	21
제	122	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 공람공고.....	22
제	123	호	도시계획사업 (공용의청사) 시행자지정.....	22
제	124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지정공고.....	23
제	125	호	교통순시원 선발시험 실시공고.....	24
제	126	호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25
제	23	호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공고) : 응시자격 정지처분 공고.....	26
◎	예	규		
제	347	호	서울특별시 회계사무 취급요강.....	28
제	348	호	경찰경비부서 인사관리규정중개정.....	47
◎	출삭통지서 (마포구 인사위원회)			47
◎	정	정		48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64 호

도시계획시설(지하도)결정
변경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지하도)
율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호(76.3.16)

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결정, 변
경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인다.

1977. 5. 28

서울특별시장

○ 시설 조 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규 모	비 고
신 설	지하도	신문로 1가 교육회관앞	B=27.7 m L=83 m	지하보도및상가
"	"	종로 2가 Y.M.C.A 앞	B=25.2 L=122	"
"	"	남대문로 2가명동입구	B=29.2 L=87.5	"
"	"	종로 5가전철역 전철	B=27.2 L=400	"
기 정	"	중구남대문로 3가시경앞	B=80 L=24.2	"
변 경	"	"	B=147 L=21.2 ~24.2	"
신 설	"	동대문구중화광장(동일로)	B=16 L=400	지하보차도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7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177 호 (62.12.8) 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

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6. 1

서울특별시장

○ 도로일부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광로		7	40m	4,000m	서대문광장	동대문광장	중로2가~세운상가간 (490m)
변경	"		7	40~42m	4,000m	"	"	남측으로 7m 폭원 확장

※ 별첨 :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73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안양시 도시계획구역 내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과 동시에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을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행정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안양시 시흥군)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6. 3

서울특별시

노선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대로	3	87	25m	4,500m	부천교도소앞	광명리도시 계획구역계	
변경	"	3	87	25m	4,500m	"	"	후반부분노선 위치 변경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전기공급설비(345KV 영서변전소)	경기도시흥군 광명리노은사리 일대	157,500㎡	안양시도시계획도로 부분(1,500㎡) 제외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174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14 호 (77. 4. 20)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6 조, 동법제 27 조,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 3. 16) 의 제한위임규정에
의거 시행. 가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

2. 관세도서는 관악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게 보인다.

1977. 6. 4

서울특별시

가. 노 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목원	연장	시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1	10m	162m	봉천동산 113-5	봉천동산 113-5	
"	"	4	4	148	"	"	
"	"	4	4	83	"	"	
"	"	4	4	35	"	"	
나. 공 원 조 서							
구분	분 류	공 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아동공원	봉천제2아동공원	봉천동산 113-5	469㎡			
다. 쓰레기적 환장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쓰레기적 환장	봉천동 산 113-5	258㎡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산 113-5호 2) 사업의 종류 :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시행허가 3) 사업시행면적 : 11,265평방미터 4)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태원동 5-23 이재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 5가 336 허균면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에정일 : 사업실시허가시행일 나)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의의 권리명세(생략)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와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생략) : 별첨 8) 허가내용 : 별첨허가도서			

허 가 증	계획사업의 시행을 별첨과 같이 조건을 부하여 허가함.
1. 허가번호: 서울특별시고시제 174호	
2.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산 113-5호	1977. 6. 4
3. 사업의종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서울특별시장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5-23호 이재순외 1인	허 가 조 건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예정일: 사업실시허가시행일	1. 본 사업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나. 준공예정일: 착수일로부터 6개월	시공하되 다음 각 허가조건을 순
6. 사업시행면적: 11,265 평방미터	수함은 물론 도시계획법이 규정한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생략): 별첨	절차와 명령 또는 이에 관한 처분을 준수하며, 제공하여야 한다.
8.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생략): 별첨	2. 본 사업의 공사착공시에는 착공
9. 공사설계도서: 별첨	제, 준공시에는 준공제환 제출하여
위와같이 도시계획법 제24조, 동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사업구역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계표지수(9×9) 각목을 경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의 시행과정에 있어 타
	인의 재산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사유도 피해가 받

<p>생하였을 경우에는 시행자책임(부담)에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고, 기타 다른피해도 또한 같다.</p> <p>5. 본 사업지역내의 임목철제, 사삼 지정지해제, 발파허가등을 요할시는 별도 허가를 득한후 착공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6. 본 사업착수와 준공에 있어서는 별도로 지적법 제20조의 규정이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고 준공시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측량성 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p> <p>7. 사업시행자는 공사진척 상황을 매 주 1회씩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8. 본 사업 시행지역내의 하수시설은 하수시설물 표준도에 의하여 시공 하되 관부설은 흘관을 사용하여야 한다.</p> <p>9. 배수계획중 배수당 평면도에 표시한 U형 측구 부설구간은 하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지(폭</p>	<p>2미터)를 확보하여야 하고, 제2호선, 제3호선은 기존하수관까지 $D=600\%$로 연장 시공할 것이며 사유지는 공공용지로 확보하여야 한다.</p> <p>10. 옥내시설을 제외한 급수시설은 구청장의 별도승인을 얻어야 하고, 옥내흡수정이하장치(가압장치)는 소정기준에 맞추어 시공하여 시설 원료와 동시 시설물일체들 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귀속시켜야 한다.</p> <p>11. 본 사업지역내의 석축의 높이는 2.5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초과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는 건설부세정 표준구조물에 의하여 용벽으로 시공하여야 한다.</p> <p>12. 절개지에는 메블임 및 식수등의 녹화단장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p> <p>13. 수허가자는 공사완료후 사업지역내의 공공용지(도로, 공원, 계획장)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귀속시켜야 한다.</p> <p>14. 시행자는 본 공사집행을 중도에</p>
--	--

중단 또는 미시공하거나, 변경 시공하는등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기간의 연장, 기타 허가조건과 행정지시에 위배 불응할 시는 도시계획법 및 행정대집행법이 규정한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5. 본 허가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행정지시를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6. 포장공사는 서울특별시 포장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어린이 놀이터는 필요한 제반시설을 시행자가 하여야 한다.

18. 본 사업지역내의 공공시설물은 공사준공후 1년동안은 수허가자 부담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9. 수허가자는 본공사 이행보증금 1,802,400 원을 공사감독청(관악구청)에 예치하여야 한다.

20. 이상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본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조건외의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고시제 175 호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75 호(76.10.23)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동법 제 25 조 및 건설부고시제 41호(77.3.16)의 권한위임규정에 의하여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세도서는 관악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6. 4

서울특별시장

가. 토 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목원	연 장	시 절	종 절
신설	도로	2	8㎡	165 ㎡	봉천동산 59-1호	봉천동산 59-1호
"	"	2	8㎡	79 ㎡	"	"
"	"	3	6㎡	30.9㎡	"	"
"	"	3	6㎡	72.5㎡	"	"
"	"	3	6㎡	142.5㎡	"	"
"	"	3	6㎡	70 ㎡	"	"
"	"	4	4㎡	37.5㎡	"	"
나. 공 원 조 서						
구분	분 류	공 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아동공원	봉천제3공원	봉천동산 59-1호	1,077.6㎡		
다. 쓰레기적환장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쓰레기적환장	봉천동 산 59-1호	124.8㎡			
라. 주 차 장 조 서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교육개발원주차장	봉천동 산 59-1호	518.9㎡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관악구 봉천동산 59-1호 2) 사업외종류 :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시행허가 3) 사업시행면적 : 21,497평방미터 (6,503평)				4) 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우면동 산 20-1호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이 영 덕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p> <p>가) 착공예정일 : 사업실시 허가 시행일</p> <p>나)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6개월</p> <p>6)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적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생략)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생략) 별첨</p> <p>8) 허가내용 : 별첨허가조서</p>		<p>◎ 서울특별시고시제 176 호</p> <p>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일부 변경</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학교)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일부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1977. 6. 4.</p> <p>서울특별시장</p>		
<p>가. 도시계획 시설(학교)결정 및 일부 변경조서</p>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	비 고
신설	학 교 (중, 고등학교)	관악구 신림동 산 203 의 2 의 3 필지	28,736 (8,708명)	
기정	학 교 (중 학 교)	영등포구 신월동 산 10 의 1 필지	18,466 (5,555명)	
변경	학 교 (중, 고등학교)	영등포구 신월동 산 10 의 2 필지	37,159 (11,238.3명)	추 가 5,652.4명
기정	학 교 (문광여자중, 고 등학교)	강남구 역삼동 138 의 10 의 11 필지	24,380 (7,375명)	
변경	"	강남구 역삼동 138 의 10 의 37 필지	51,756 (15,656명)	추 가 8,281명
<p>별첨 도면 생략.</p>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7호</p> <p>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적 승인</p> <p>1. 건설부 고시 제 37 호 (76.3.27) 와 건설부 고시 제 14 호 (77.1.31) 로 일부 변경 결정 고시된 용도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이</p>		<p>외거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출장소)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1977. 6. 7 .</p> <p>서울특별시 장</p>	
<p>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적승인 조서</p>			
변경구분	위치	면적 (㎡)	비고
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강남구 개포 . 일원 . 수서 가락동 일대	10,238,000	
주거지역 → 생산녹지지역	강남구 수서 . 문정 . 세곡동 일대	435,000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강남구 수서 .가락동 일대	2,101,000	
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강남구 가락동 일대	480,000	
(도 면 생 략)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9호</p> <p>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 및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 (공용 의 청사) 을 다음과 같이 결정</p>		<p>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 6. 8.
서울특별시장

가. 시설결정(공용외 청사)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공용외 청사 (상봉동파출소)	동대문구 상봉동 100-9 10.11.	374㎡ (96명)	시유지 38.4명 사유지 57.6명 계 96명

별첨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80호
도시계획 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학교)
을 다음과 같이 신설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같은법 제 13조와 건설부
가. 도시계획 시설(학교)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고시 제 41 호(77.3.15)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
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 6. 8.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학 교 (국민학교)	영등포구 구로동 166 부근	13,230㎡ (4,002명)	
신설	학 교 (고등학교)	영등포구 구로동 164 부근	30,720㎡ (9,293명)	

별첨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181호</p> <p>도시계획 시설(광장)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광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하였던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호(77.3.16)의 규정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p>		<p>외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1977. 6. 9.</p> <p>서울특별시장</p>		
<p>광장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p>				
구분	광장번호	광 장 명	면 적	비 고
기정	61	회현동 2가 광장	6,360㎡	
변경	61	·	6,605㎡	
<p>※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끝.</p>				
<p>◎ 서울특별시고시제 182호</p> <p>동청사 위치변경고시</p> <p>서울특별시 일부동청사의 위치를</p>		<p>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고시한다.</p> <p>1977. 6. .</p> <p>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p>		
<p>다 음</p>				
동 명	위 치 변 경 내 용		이전일자	
	이 전 전	이 전 후		
성동구 옥수제 2동사무소	성동구 옥수동 244-10	성동구 옥수동 옥수제3지구 4부력 2호	77.6.1	

◎서울특별시고시제 183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 177 호 (1962.12.8)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6)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7. 7. 6 .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시행의 위치 : 관악구 대방동 39 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관악구 대방동 39 번지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폭 = 15-20 m
연장 = 1,400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77. 3. 1 ~ 1978. 12.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토지조사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84 호

도시계획사업 (공용의 청사)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6 호 (77. 4. 15) 로 도시계획 시설 (공용의 청사) 설정 및 지적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 3. 16)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p>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1977. 6.11</p> <p>서울특별시</p> <p>1. 사업시행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440의 13필지</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공용외 청사) 시행허가</p> <p>3. 사업시행면적 : 13,249.6㎡ (4,008명)</p> <p>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영등포구 여의도동 1-1 국회의원회관 사무총장 이호진</p>	<p>5. 사업확수 준공 예정 년월일</p> <p>가.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p> <p>나. 준공년월일 : '77.12.15</p> <p>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면적 (별첨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p>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조서

지	번	부	구	조	면	적	비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41	대		401	명		
	"	1-442	"		401	"		
	"	1-443	"		401	"		
	"	1-444	"		441	"		
	"	1-445	"		267	"		
	"	1-446	"		241	"		

지 번	목	구 조	면 적	비 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1-447	대		241 평	
" 1-448	"		241 평	
" 1-449	"		241 평	
" 1-450	"		241 평	
" 1-451	"		241 평	
" 1-452	"		241 평	
" 1-137	"		9 평	
		계	4,008 평	일단지
위 14 필지 지상	본 건물	철근콘크리트 조명옥 계 5층	2,295.21 평	25 평형 2 동
	"	"	1,955.94 평	20 평형 2 동
	"	"	1,963.93 평	30 평형 1 동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	116.36 평	
	보아라빌	조명옥 계 지하		
	상 가	철근콘크리트		
		조명옥 계 2층	349 평	
		계 연건평	6,490.45 평	
<p>6. 토지 및 동 토지 정착물 소유 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 의 54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내 역</p> <p>◎ 서울특별시고시제 185호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4호 (77.4.20)로 시설결정 및 지적</p>		<p>승인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동법 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의 결한 위임 규정에 의하여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관악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1977. 6. 11. 서울특별시 장</p>		

가. 로 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폭 원	연 장	시	종
신설	중로	1	16.5m	27.5m	사당동 산 45-8호	사당동 산 45-8호
"	"	2	14.5"	23.5"	"	"
"	소로	2	8.0"	83.0"	"	"
"	"	2	8.0"	49.5"	"	"
"	"	3	6.0"	58.5"	"	"
"	"	3	6.0"	169.0"	"	"
"	"	3	6.0"	72.0"	"	"
"	"	3	6.0"	72.0"	"	"
"	"	3	6.0"	72.0"	"	"
"	"	3	6.0"	72.0"	"	"
"	"	3	6.0"	216.0"	"	"
"	"	3	6.0"	69.0"	"	"
"	"	3	6.0"	70.5"	"	"

나. 공 원 조 사					
구분	분 류	공 원 명	위	치	면 적
신설	아동공원	상신제 1 공원	사당동산	15-8호	506 평
"	"	상신제 2 공원	"	"	360 평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 산 45-8호	3) 사업장사행면적 : 21,865.8 평방미터
2) 사업의 종류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6,614.4 명)

<p>4) 사업시행장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동로구 종로1가 28-2 포한보주택주식회사 대표이사 정태수</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에정일 : 사업실시허가시행일 나)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6개월</p> <p>6)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확 조서, 지적및 지목과 소유권의 권리명세 (생략) 별첨</p> <p>7)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별첨</p> <p>8) 허가내용 : 별첨허가 서도 생략가. 취소단체.</p>	<p>○ 서울특별시고시제 186 호</p> <p>사회단체등록취소도시</p> <p>문화중보부에 등록된 사회단체 대한 두도에슬협회 본부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에 의거 등록취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부들 논일자로 등록취소 하였거 동조 제 2 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7년 6월 10일</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관 구 자 춘</p>
--	---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기
제 37 호	69.9.20	대한두도에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피 윤 순	종로구창신 581-1

나. 취소년월일 : 77.6.2

<p>○ 서울특별시고시제 187 호</p> <p>도시계획시설 (농농외청사) 결정 및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 (농농외청사)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p>	<p>지적승인 하였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에 관계인에게 보인다. .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1977.6.13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서울특별시 장
 가. 시설결정 (농용외 청사) 및 지적상인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농용외 청사 (용산구청)	용산구 원효로 1가 25 부근	6,519.4 평 (1,972.1명)	국유지 : 1,773.1명

별첨 도면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17 호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18 조 제 3 호의 규정에

외거 다운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1977.6.2

서울특별시 장

업 제 명	대표자	허가번호	소 제 지	취 소 사 유
서정공업사	한용석	1-7-16	동대문 권북 2 동 1049 - 697	법정기간내에 사업 재개 미실고
세일산업고분경		1-5-16	성동구 성수 1가 13-126	.

<p>○ 서울특별시 공고제 119 호</p> <p>주책개발을위한계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공람공고</p> <p>1. 주책개발을 위한 계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금호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42조와 동법제 86조에 의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p> <p>2. 도시계획법 제41조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14일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를 같은 합니다.</p> <p>1977.6.4</p> <p>서울특별시장</p>	<p>○ 서울특별시 공고제 120 호</p> <p>K.S 표지정지처분공고</p> <p>공업표준화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한국공업규격) 표지정지 처분하였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p> <p>1977.6. .</p> <p>서울특별시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번호 : 제 766 호 2. 허가일자 : 1973.2.26 3. 제조업체명 : (주) 대명제약소 4. 대표자 : 김 동 운 5. 소재지 : 마포구 영리동 174-3 6. 품질번호 : KSC 4202 7. 품 명 : 저압 3상 유도전동기 (3φ 4P 1IP 5HP) 8. 처분기간 :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후 당시의 액체 준치가 있을 때까지 9. 표지정지사유 : K.S규격 기준미달 10. 기준미달항목 : 구조, 효율
---	--

○서울특별시 공고제 122 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
 (기간연기)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가 시행중에 있는 영
 동 제 2 지구 (추가) 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기간연기)코저 토지구획정리 사
 업법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인의 공람에 공합니다.

2.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관계도서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별
 도의 공고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
 하고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1977.6.
 서울특별시장

사업계획 - 변경 공람내역

지구명	인가면적	당 초	변 경	사업시행자
영동제 2 지구 (추가)	25,824 평	75.2.14 ~ 76.12.31	75.2.18 ~ 78.12.3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공고제 123 호
 도시계획사업 (공용외청사)
 시행자 지정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3 호 ('77.
 5.18) 로 도시계획 시설 (공용외
 청사) 결정된 도시계획 사업 시행
 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3 제 1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사업 시행청인 대법원 시설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6.8
 서울특별시장

<p>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185부근</p> <p>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 사업 (공공의 청사) 사범 연수원신설</p> <p>3. 사업시행면적 : 100,400㎡ (30,371명)</p> <p>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대법원 행정처장</p> <p>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1978.2 나. 준공예정년월일 : 1979.10</p> <p>6. 조 건 가. 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법 제 28조 및 동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을 받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공시송달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다. 도시계획법 제 78조의 규정에</p>	<p>의한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p> <p>라. 본 사업 시행에 있어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시설의 설치와 기타 행정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p> <p>마. 본 사업 시행자 지적으로는 사업을 시행할수 없으며, 별도 사업실시 계획을 인가 받아야 한다.</p> <p>○ 서울특별시 공고제 124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지정공고</p> <p>1.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9 호 (77.5.20)로 환지계획 변경공람공고한 영동 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에 내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 인가라고</p>
---	--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를 변경 지정하였기
 공고 합니다.

2. 환지 예정지 변경 조서는 서울
 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게 공고 사항은 별도 서면 통지
 할것이나, 미수명자에게는 이 공고
 로 갈음 합니다.

1977.6

서울특별시

(환지 예정지 변경 지정 내역)

- 가. 사업명 : 영동 제 2 지구 토
 지구획정리 사업
- 나. 변경위치 : 강남구 도곡동
 산 2 의 4 호외 38 필지
- 다. 변경면적 : 22,759 평

○서울특별시공고제 125 호

교통순시원 선발시험실시공고

도로 교통법 제 69 조 3 항에 의거
 1977 년도 제 1 회 교통순시원 선발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 1. 선발인원 ○○○명
 - 2. 원서교부 및 접수 77.7.4 ~
 77.7.9 시경명원안내실
 - 3. 응시자격
 - 가. 병역을 필한 자로서 1977.6.1
 현재 25 세이상 35 세까지의 자
 - 나. 신체조건
 - (1) 신장 165 센치미터 이상 체중
 55 키로그램 이상으로 신체건강
 하고 각종질환이 없는자,
 - (2) 기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규정에 적격한 자
- 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자
 로서 76.6.1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4. 시험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합격자 발표	비고
자체신체검사	7 10	면허계	당일즉석에서발표	필기시험 장소는 자체신체검사서 공표
필기시험	7 17	동국대학교		
면접시험	7 27	교양센터		
합격자 발표	7 29			
<p>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09:00 까지 수험표, 주민등록증, 필기도구(청 흑색볼펜) 운동화(7.10에한함) 저착집합</p> <p>나. 필기시험 합격자는 경찰병원주 발행 신체검사서를 77.7.27 까지 교통과에 제출</p> <p>5. 필기시험과목: 국사, 법지례의, 논문 (경찰공무원순경급 채용시험에준함)</p> <p>6.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기 찰국 민원봉사실 배부) 나. 율리수수료(서울특별시 수입 증지 500원) 다. 사진 3cm X 4cm 2매 라. 주민등록초본 1통</p> <p>7. 합격자처우 합격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서울특별시 장급직원에 임용 시 서울특별시 경찰국 산하 각 경찰서에</p>			<p>배치함.</p> <p>1977. 6</p> <p>서울특별시 경찰 구자춘</p> <p>○ 서울특별시 공고 제 126 호</p> <p>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p> <p>1. 잠실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 지계획지수 일부토지에 대하여 환지 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제 47 조 및 동법 제 55 조의 규정 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 계인의 공람에 공합니다.</p> <p>2. 환지계획 변경조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 도 서류 송달 할것이나, 미수행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p> <p>1977. 6.</p> <p>서울특별시 장</p>	

(환지변경내용)

가. 사업명 : 잠실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나. 변경면적 : 644,716평

(338,068.2)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신천동 235의 2호의 40필지

라. 유의사항 : 잠실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년이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득한 토지의 일부가 (644,716평) 공사 준공됨에 따라 충전토지의 위치를 감안 현재 유보된 보유지에 추가 환지계획 하였음.

98구획 및 120구획내 일부 토지는 공유수면 면허 조건에 따라 10미터 제방에 20미터로 확장 준공됨으로 제1유수지 동측 15미터 계획 도로의 폭원 유지와

도로연결을 위하여 15미터 도로의 일부 위치를 변경 조정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3 호

응시자격정지처분공고

당시가 76년도에 시행한 5급 행정직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다유자들은 허위서류를 제출 부정합격 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6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시행일로부터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 또는 사법 시험령에 의한 시험과 기타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였음을 공고한다.

1977.6.7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위원장

1. 응시자 걱정지처분자명단

응시 번호	성 명	본 처	주 소	부정행위 방 법	자격정지 기 간	비 고
8	윤창종	경남의 합안 842	도봉 미아 5산 75	허위서류 제출	76.2.8 - 81.2.7	76.2.8 시행
19	홍문표	경남의 합안 1047	"	"	"	"
21	성주경	경남의 창녕 1563	성북 길음 575-17	"	"	"
24	안양수	경남의 합안 309	도봉 미아 5산 75	"	"	"
28	공신희	경남의 창녕 179	마포 아현2 33;-1	"	"	"
31	엄정호	경남의 창녕 1177	도봉 미아 3 125-38	"	"	"
24	권영범	경남의 창녕 464	성북 길음 575-216	"	76.4.18 - 81.4.17	76.4.18 시행
13	김정수	경남의 창녕 565	중구 중림 227 5/5	"	76.8.8 - 81.8.7	76.8.8 시행
14	성기복	경남의 창녕 844	영등포도림2 178 14/2	"	"	"
19	김채돌	경남의 창녕 459	동대문중화 306-16	"	"	"
21	공민종	경남의 창녕 389	성북길음 551-14 2/1	"	"	"
24	김종덕	경남의 창녕 229	중구 중림 227 5/5	"	"	"
36	성진규	경남의 창녕 530	관악 후석 207 2/2	"	"	"
39	성덕조	경남의 창녕 530	"	"	"	"
42	황호용	경남의 합안 499	관악 후석 1 225 5/1	"	"	"
12	김중근	경남의 창녕 1310	용산 이촌 296 15/1	"	76.12.5 - 81.12.4	76.12.5 시행
31	박창수	경남의 창녕 56	동대문중화 330-41 35/4	"	"	"
32	성준경	경남의 창녕 283	영등포도림 2 178	"	"	"
33	김연용	경남의 창원 440	관악 후석 1 195-34	"	"	"
34	주수희	경남의 합안 3-1	동대문중화 306-16	"	"	"
44	이판우	경남의 창녕 421	관악 후석 1 225-40	"	"	"
47	박경호	경남의 창녕 54	영등포도림 2 253 7/2	"	"	"

예 규

서울특별시 회계사무위규요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7년 6월 2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 서울특별시예규제 347호

서울특별시회계사무위규요강

I. 목 표

- 1. 효율적인 예산집행
- 2. 계획성있는 사업수행
- 3. 적법, 공정, 신속, 정확을 기한 경리와 회계질서 확립

II. 계약을 요하는 사업의 일반지침

1. 계약사무의 질서확립

서정세신의 일환책으로 정부에서는 모든 계약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였고 관계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당시에서도 이에 따라 모든 회계업무물 관계법규에 적법하게 계약사무의

질서를 확립한다.

2. 사업계획의 수립

소관과장이 계약을 요하는 모든 사업을 시행코자 할 때에는 그 책임하에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및 자금배정등을 종합 검토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연간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특히 청내 공통사용의 물품은 월초 또는 분기초에 물품구매 요구서를 일괄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기간의 산정

소관과장은 전항의 계획에 따라 각 단위사업을 집행코자할 때에는 결재소요일수와 계약소요일수(제한경쟁계약은 27일, 공개경쟁계약과 지명경쟁계약은 47일간) 및 제조 또는

시공기간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수행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 품의 및 협조

가. 사업시행 품의 (공사)

사업시행품의서에는 계약에 관한 다음요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 1) 공사명
- 2) 예산과목
- 3) 계약방법
- 4) 준공기한
- 5) 하자보증기간
- 6) 기타사항

나. 관계과와의 협조

사업시행 품의서에는 예산 및 회계관계 국·과장의 협조물 거처 질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5. 계약방법의 결정과 계약심사

국무총리 승인절차

가. 계약방법의 결정

소관과장은 당해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적조건·기술성·특수성·난이성 회귀성등과 특수장비 또는 기계의 필요도등을 종합검토하여 소속국장의 지시를 받아 계약방법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에 대한 의견을 첨부한다.

나. 계약심사

1) 전항의 계약방법이 개한 또는 지명이나 수의계약으로 집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별첨양식 서식 1호에 의한 계약심사 각의서물·경리관 (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관국·과에서는 계약심사결과 통보서물 사업시행품의서에

· 첨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
제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의 사전승인 (국무총리)

1) 승인대상

가)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
계약으로서 3,000 만원이상

나) 일반경쟁계약의 경우

1 억원이상

2) 승인절차 (공사)

경리관은 각 사업주관 국장
으로부터 제한경쟁 또는 지
명경쟁이나 수의계약 요청의
견서를 받은 때에는 계약예
정일 20 일전까지 계약심사위
원회에 부의할 것이며 사업
주관국은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 소정
의 결재를 득한후 즉시
별첨양식에 의거 승인신청서
(서식 2 호) 를 경리관 (재무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물품구매 계약

1. 대상업무

본청 경리관 소관업무중 시설공사
및 용역이외의 물품에 대한 완제
품 제조가공 수리 운송창관 및
임차에 관한 사항

1 의 2 물품구매 심사

가. 심사대상 : 물품의 구매에 있어
서 단위당 가격이 50 만원이상
총액 300 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품목에 대하여
구매의 적정여부를 심사 결정
하기 위하여 물품구매심사제도를
운용한다.

1) 시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할 수 없거나 다른 물품의
매입으로 사업목적은 달성할
수 없을 경우의 특허품 실용
신안 등록품

2) 수입입찰상품

- 3) 국산대체불가능 품목으로서 내자로 구입하는 수입품
- 4)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및 제조
-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과 주요물품

나. 구 성

1) 본청에서는 국(관.과)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소(3급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는 단위기관별로 구성하며 단위기관장을 심사책임관으로 한다.

심사책임관 - 해당국(관.과)의 장
 부심사 - 구매요구부서의 담당과장
 심사관 - 해당국의 과.계장 (3인이상)

2) 전문지식의 활용을 위하여 타국의 공무원을 위촉하여 작문을 받거나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 운 영

1) 각 관·과장이 심사대상의 구매요구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요구서(서식 5호)를 심사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요구부서의 담당계장은 심사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 및 질문에 대한 자료제시,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부의안건의 심사는 계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심사결정서(서식 6호)를 구매요구서(계약심사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심사회의서)에 첨부 경리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관 보조구분

발주부서로서의 주관과와 집행부서로서의 회계과로 구분. 경리관을 보조한다.

3. 구매요구의 품의

발주 주관과는 제반회계관계법규와 당시 위임전결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품의 요구하되 다음사항을 명백히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 구매품목중 저장품에 대하여는 조달가격표를 참조 요구하고 반드시 조달청 외의 구매의사확시를 하여야 한다.

가. 기본사항

- 1) 구매목적 및 용도
- 2) 구매방법 (공개,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 단가, 총액, 희망수량)

3) 납품기한 및 장소

- 4) 검사수단 (관능, 이화학시험)
- 5) 하자 유무 및 기간
- 6) 자격제한사항 및 특수조건
- 7) 지출비목
- 8) 산출기초조사서 (별봉)
- 9) 구입명세 (별지작성)

나. 완제품 구입

- 1) 구체적인 규격
- 2) 정부군품 분류표에 의한 표준설명
- 3) 미터법에 의한 단위
- 4) 기타 전품이나 카다록 제시

다. 제조 가공품

- 1) 시방서
- 2) 설계도면
- 3) 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제역무비, 잡비로 구분)

<p>라. 수입물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원 2) 수입물품 원가계산서 3) 기타 시장제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p>마.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12 조 1항 1호 (계약사무처리규칙제 39 조 제 1항제 2 호 가, 나, 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증자료 <p>바. 운송보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송구간 및 거리계원 2) 운송수단 (차종) 3) 운송 조작비 적용구분 (용적 또는 중량치, 시간제 및 거리제) 4) 보관수단 및 장소 <p>사. 수 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리 명세 2) 수리 단위별 내역서 <p>아. 입 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차대상 2) 입차기간 및 장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입차조건 <p>4. 구매예정가격의 결정</p> <p>경리관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93 조, 제 94 조, 제 95 조, 제 116 조, 제 117 조 및 계약사무처리규 칙제 5 조 내지 제 8 조 규격에 의거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서는 다음 각호 기준과 방법으 로 조사 작성한 주관과 산출거 초 조사서와 회계과에서 재확인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에 의거 결 정한다.</p> <p>가. 산출거초조사서작성 (주관과)</p> <p>발주 주관과에서 산출거초 조사서 (서식제 3 호) 를 작성함 에 있어서는 다음 근거를 명 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제조가 공품의 경우는 요소별 (재료비 노무비, 제역무비, 제잡비로 구 분)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p>
--	--

- 1) 시장조사 견적서 2개치이상
(도매가격이나 대리점 또는
공장도 가격)
- 2) 종합물가 시세월보 참조
- 3) 중앙조달물자 구매실례가격
참조
- 4) 정부 통제가격 (고시가격, 기
준가격, 최고가격등) 참조
- 5) 필요시 물가 조사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의뢰 조사한 가격
- 6) 기타자료

※ 산출적용가격은 조사가적
을 참작하여 산출하고 산출
기준 조사서 (서식제 3호)
작성에 있어서의 확인자
전결구분은 30만원 이하는
과장 (담당관) 그이상은
국장 (관) 이 확인자가
된다.

나. 예정가격 조서작성 (회계과)
경리관의 보조계약 담당공무원
은 주관과에서 작성한 산출기준
조사서의 조사자료 적정여부를
다음 기준에 의거 재확인하고
산출서에 의거 예정가격조서물
작성하여 경리관에게 제출한다.

-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12조
1항 4호내지 8호까지의
사항은 동법 제 116조의 규
정에 의거 예정가격 조서작성
을 생략하고 주관과 산출기준
조사서에 의거 산출서만을
작성 시담 한도액을 결정한다.
- 2) 전항 이외의 것으로서 3)
항과 4)항을 제외하고는
주관과 산출기준 조사서에
의거 예정가격을 결정하되

품목별 단위당 가격이 50만원 이상이거나 구매총액이 50만원이상과 제조 수리 기타의 경우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공신력있는 물가조사기관에 거래신뢰가격이나 또는 원가조사를 의뢰하여 주관자 산출기초조사서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회계과에서 별도조사하여야 한다.

3) 긴급수의계약의 경우는 주관자 산출기초조사서에 의거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4) 정부통제가격은 그부분에 따라 고시가적은 고시가적율, 기준가격과 최고가격은 동가적율 상한선으로 하여 시장사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IV. 시설공사 도급계약

1. 설계도서의 작성

가. 설계 심사제도의 강화

소관과장이 시설공사를 발주코자할 때는 결재를 득한 설계지침서에 의거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단일공사 및 연차공사를 막론하고 설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공사실제는 반드시 설계심사규정(서울특별시 설계심사위원회운영규칙)에 의한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1) 설계도서는 공사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도면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기타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이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도서관 내역서는

불량표기 내역서와 금액표기 내역서의 2부를 작성 금액 분표 내역서는 봉투에 넣어 첨부하여야 한다.

2) 공사 설명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하고, 공사개요표와 공정표가 있어야 한다.

3) 시범서에는 공사시공상 야기 될 교통문제, 공해문제와 불의 의사고등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또는 책임소재의 명시와 특수작업, 실제변경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등 예견되는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동일 회계년도 내의 시거적 또는 불량적 분할 발주는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년차 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1차공사 발주시 총공사 예정 금액을 동시에 실제 부기하

여야 한다.

5) 동일 회계년도 내에 부득이 분할 발주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건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총공사예정금액 부기는 전항과 같다.

6) 전항의 경우 분할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7) 실제도서 내역서 작성기준 실제내역서의 노임, 자재기준, 단가 및 품셈등은 현실화하도록 하되 정부 또는 시가 책정한 기준율을 적용한다.

나. 실제상의 책임한계

실제내역서중 기술상의 수량 책정과 단가 적용상의 오류는 소관과에서, 계산상의 오류는 소관과와 회계과의 관계책임자가 각각 그 책임을 진다.

2. 시행품의 및 협조

시설공사 시행품의시에는 건항의 설계도서 및 설계심사위원회를 거친 사항은 설계심사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위임건설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거쳐 소정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관련부서와의 협의

가. 소관과장은 공사시행품의서 발의와 동시에 공사구역내의 지장물 철거 및 용지수용사무를 담당한 관제부서와 당해 관급자제 위급부서에 대하여 공사시공 예정 일정표를 첨부하여 수용보상 문제와 관급자제 수급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간내에 저축되는 공공 또는 공용시설물의 이설이나 철거에 관하여도 위와같다.

4. 시설공사의 계약

가. 계약의 절차 및 체결

1) 경리관은 계약심사(계약심의위원회심사 포함)가 끝난후

사업 주관국으로부터 시설공사 시행 승인요청서를 접수하여 조달청장에게 승인 요청한다.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한함)

2) 소관국장은 경리관(회계과장)으로부터 조달청장의 시행승인 통보를 받은후 실제시상 수량 및 단가를 최종 확인검토후 즉시 경리관에게 최종결재를 득한 품의서를 이송한다.

3) 경리관은 결재를 필한 공사 시행품의서를 이송받았을 때에는 결재에서 정한 계약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방법이 결정승인된 시설공사중 지명경쟁에 의한 경우에는 미리 지명경쟁에 참가할 의사여부를 확인하는 수낙서를 제출하게 한 후 지명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 내역의 확인 및
부분송부

1) 계약서에 첨부되는 공사
내역서와 공정표 현장 대리
인계 등에 소관과장이 미리
지정한 현장 감독관의 인계
이 있어야 한다.

2) 경리관이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서의
부분 1통을 소관과장에게
회송한다.

다. 준공기한의 연기

준공기한을 연기조치함에
있어 사업소관과장은 연기사유
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귀책소재와 지체상금 징수여부
를 명백히한 서류(서식 제 4
호)를 경리관에게 이송하면
경리관은 담당공무원의 보고를
받아 연기 여부를 결정 통보
한다.

五. 설계·측량·조사 등의 용역계약

1. 외부발주의 억제

가. 설계용역의 외부발주계약은
특정의 기술·학술 경험과 지
식을 겸비한 자의 착안 등을
요하는 사안으로 시의 공무원
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 측량·조사 등의 용역 외부
발주계약은 업무량의 과다로
시의 공무원으로서는 소정기일
내에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
는 사안과 학술·기술·지식을
겸비한 자의 재분석을 요하는
사안에 한한다.

2. 과업지시서 작성

가. 설계조사 측량 등 제용역
계약은 시가 얻고자 하는 성
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세밀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은 시설공사 도급계약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六. 경비의 지출

1. 의무적 경비의 지출

제세공과부담금, 공공요금 공무원의 보수 등 의무적 경비는 소관과장이 납입고지서 또는 지급조서를 확인한 다음 지출원에게 결제서류의 원본을 이송하여 지출 요구한다.

2. 시제 등의 상환

기채·지방채·차입금·차관의 원리금 상환 및 매입재산대금의 연부금과 이와 유사한 경비의 지출은 늦어도 지불도래 1개월 이전에 소관과장이 지출품외서를 작성 예산과장의 협조를 거쳐 소정의 결제를 얻은 다음 지출기일을 명시하여 지출원에게 지출요구한다.

3. 보조금·교부금 등의 지출

보조금·교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이와 유사한 경비는 소관과장이 관련국과의 협조를 얻어 종합 검토한 후 품외서를 작성하고 소정결제를 얻은 다음 지출원에 지출요구한다. 다만, 대상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 국고보조 및 기채교부금·전입금·대여금·기부금 등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비는 당해 재원의 수입이 있는 후가 아니면 지출할 수 없다.

4. 보상비등의 지출

가. 공사구역내에 편입되는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비와 수용토지의 대가지출은 소관과장이 공사집행예정공정표 등 관련국과의 협조를 얻어 종합 검토한 후 월별·노선별로 세부지침서를 작성한다.

나. 매월 보상비 지출 소요액은 늦어도 그 전월 20일까지 지출품외서(보상계획)를 작성

회계과장의 협조를 거쳐 소정 절차를 밟한 다음 그 보상액 상의 내역 (지번과목 및 금액) 을 소관과장이 지출원에게 통보한다.

5. 자금의 전도와 그 제한

자금의 전도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48 조에서 열거된 경비로서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토록 하되 이미 지급된 전도자금의 청산을 택만히 한 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경비지출의 순위

각종경비의 지출순위는 다음 원칙에 의한다.

가. 급여·여비·수당·임금·급양

비·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

나. 100만원 이하의 소액경비

다. 노임 및 중요사업에 수반된 경비

라. 기계의 원리금 차관의 원리

금 및 계약에서 지출시기를 약정한 경비와 계보조금

마. 공사지장물의 철거 및 토지에 대한 보상금

바. 기타의 경비는 지출결의서 접수순위에 의하되 다만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 지출할 수 있다.

7. 부 칙

가. 본 예규는 서울특별시 (본청) 일반회계에만 적용하고 각 특별회계 및 산하기관은 이를 준용한다.

나. 이 요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서울특별시에규 제324 호 (76. 4. 8) 로 시달된 회계사무 취급요강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서식제 1 호)

제한명외
제약심사신청서

1. 사 업 명
2. 사 업 개 요
 - 1) 총 규 모
 - 2) 전 차 공 사
 - 3) 금 회 공 사
3. 공 사 기 간
4. 사 업 의 위 치
5. 소 요 예 산 액
 - 1) 총 예 산 액
 - 2) 기 집 행 액
 - 3) 금 회 집 행 액
 - 도 급 액
 - 관 급
 - 기 타
 - 4) 관급자재내역
6. 예 산 지 변 과 목
7. 계 약 사 유
8. 관 제 법 규
 - 1) 예산회계법시행령
 - 2) 계약사무처리규칙
9. 지명 및 수의계약 대상업체
10. 첨 부 서 류
 - 도면 (지명 및 수의)

년 월 일 장
○ ○ ○

서울특별시계약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제 2 호)

공 사 발 주 승 인 신 청 서

(1 억 원 이 상 일 반 경 쟁 계 약)

1. 사 업 명
 2. 사업 개요
 3. 사업 위치
 4. 계약 및 착수에정일
 5. 준공 (예정) 년월일
 6. 소요예산액
 7. 관급자재내역
 8. 예산지변과목
 9. 첨부서류
- 가. 설계내역서
- 나. 공사발주의 필요성 및 특징

 년 월 일

 ○ ○ ○ 장

서울특별시경리관 귀하

(서식제 4호)

준공 (납품) 기한연기조치외퇴서

1. 시설공사 (용역) 내용

- 가. 공사 (용역) 명
- 나. 도 급 자
- 다. 도 급 액
- 라. 계약년월일
- 마. 착공년월일
- 바. 준공기한

2. 위 공사 (물품) 의 준공 (납품) 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기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준공연기기한
- 나. 연기사유귀책소재
- 다. 지체상금부과여부 (부과, 미부과)
- 라. 연기사유

첨부: 연기사유 거증자료 ○부. 끝.

년 월 일

○ ○ ○ 장

서 발 특 번 시 경 리 관 귀 하

(서식제 5 호)

물품 구매 제조 심사 요구서

197

수 신 심사책임관 귀하

다음과 같이 물품구입 및 제조 기타에 관하여 심사 요구하오
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품명 명
- 2. 계약방법
- 3. 내 용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첨 부 :

○ ○ 과 장

(서식제 6 호)

○○주○○심사결정서

건 명 :

○○구매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결정함

결 정 내 용

주 제	결 의 사 함	비 고

197

심사책임관	①
부책임관	②
심사관	③
심사관	④

○ 서울특별시 제 348 호

경찰경비부서인사관리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977. 5 . .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경찰경비부서인사관리규정중개정
경찰경비부서인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 15호 및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공항경비대경비과 : 6월

16. 태능푸른동산 : 6월

제3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여
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순위자 명부의 등제는 경감
48세, 경위, 경사는 45세, 경장
순경은 40세 이하자로 한다.

(5) 단 전투경찰대 부무가 승진
조건부인자는 경비부서 2회 이
수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제1항 제11호를 다음과 같
이 하여 제18호 및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특기요원 (필경:경찰국 경무과
요원, 경찰국 각과 서무 및

경찰서 경무과 1명씩)

기타:경찰국동역, 연금담당자)

18. 경찰국 기획행정요원 (경무과
기획예산담당실무자).

19. 경찰국 공보요원

부 칙

이 규정은 1977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징계혐외자출석통지

1. 인적사항

본적 : 경남 창원 창녕 탑하리
434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
2동 331의1호

소속 : 아현2동
직급 지방행정서기보

성명 : 양봉주

생년월일 : 48.10.18

2. 출석일시 및 장소

77.6.25 12:00 총무국장실

3. 출석이유

징계사유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
기 위함

1977. 6. 15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정 정

아래와 같이 시보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시보정정기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사 항	오	정
시보 609 호 62-3 제 4 조항	지방의무기감	지방의무부기감
• 62-4 경과조치 3 항	30 일	180 일
• 62-12 7 종 4 갈	도시개발자로요원 2	도시개발자로요원 1
• 62-21 7 종 5 갈	7 종 5 갈만 사항을	7 종 4 울탄으로
• 62-22 8 종 이등병원만중	수련의 14	수련의 3
• 62-26 7 종 5 갈란	5 갈란사항을	4 울탄으로

끝.